미국-뉴욕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2019년 1월 15일 식품안전법(SFCA) 시행 예정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에 따르면, 2019년 1월 15일부터 기존 14개의 식품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 규정을 시행할 예정임

○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을 통해 행정 간소화 예상

- 교차오염, 세균감염, 식중동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적 차원 규정 강화
- 포장 및 라벨링 요건도 추후 변경 예정

○ 해당 식품군은 가공된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이며 애완동물 사료와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은 제외

구분	법률	관할
식품안전	Safe Food for Canadians Act	- 식품안전 관련 위생관리, 라벨링, 검역, 교역, 동식물 질병, 해충통제 등 통합 운영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규정
신선과일 및 채소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신선과일 및 야채 외 유제품, 꿀, 아이스와인, 유기농, 메이플, 가공식품 등 총 11가지 규정
육류 및 육가공품	Meat Inspection Act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Health of Animal Act 육류 관련 법률*)	육류검역시스템 및 수입금지 관련 *육류, 가금육 2%이상 함유제품 수입금지
수산물	Fish Inspection Act	수산물 검역

출처:CFIA

□ 주요 변경사항

○ 식품안전법 발효시 ① 생산 및 수출·입 면허발급 ② 식품 예방적방제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③ 식품이력 추적관리가 도입될 예정

① 면허

○ 캐나다 내 식품을 수출·입하거나 생산, 가공, 보존, 패키징, 라벨 외 가축도살 등의 활동을 하는 업체들은 CFIA에서 발급하는 면허 신청 필수

- 면허 신청비용은 C$250이며 발급 후, 2년간 유효
- 주요 품목별 면허 발급 기한은 아래와 같음

○ 이미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와 Fish Inspection Act에 의거하여 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 만료일까지는 기존 면허 유효

< 주요 품목별 면허 발급 기한 >

품목명	면허 발급 기한
유제품 (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 (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 (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 (Fish)	
육류 (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 (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기타 가공식품 (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씨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 (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② 식품 예방적방제 (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 상기 명시된 대부분의 식품 관련 기업들은 식품안전통제 규정 시행에 따라야 하며 식품 안전 예방정책계획서(PCP, Preventive Control Plan)를 수립해 CFIA에 제출 필수

- PCP는 기업들의 식품 안정성 유지 현황, 라벨링, 포장, 등급 부여 등의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인도적인 동물 도살활동 등의 규정 이행여부를 증명하기 위함
- 단, 수출 증명서 (Export Certificate)가 필요 없는 식품 또는 연간 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신규 법력 발효 즉시 PCP 제출 필수

- 가공식품은 판매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21년까지 유예

< 주요 품목별 PCP 제출 기한 >

품목명	제출 기한
유제품 (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 (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 (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 (Fish)	
육류 (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 (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판매액 C$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 7.16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기타 가공식품 (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씨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 (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출처:CFIA

③ 식품이력 추적관리 (Traceability)

○ 캐나다에서 수출·입 되고 생산, 유통되는 모든 식품들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단, 요식업체는 제외 대상임

○ 기업들은 식품의 원재료 출처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주요 품목별 등록 기한 >

품목명	등록 기한
유제품 (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 (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 (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 (Fish)	
육류 (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 (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판매액 C$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 7.16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기타 가공식품 (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씨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 (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필요

출처:CFIA

3. 시사점

○ 캐나다에서는 14개의 규정이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면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이 발효돼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이 2019년 1월 15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는 반드시 취득해야 함으로 수출 전 수입업체의 면허 취득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함

4. 관련 웹사이트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safe-food-for-canadians-licences-now-available-for-food-businesses-702924691.html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exports/general-requirements/eng/1503668386853/1503668443414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eng/1512149177555/1512149203296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8-108/index.html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